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119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redacted]시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A

소송대리인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5. 15.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redacted]법원 [redacted]등기소 2015. 11. 3. 접수 제22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6. 4. C, D과 사이에 B 소유의 [redacted]시 E 대 343㎡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30. B에게 '2015. 11. 30.까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438,7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B는 2015. 10.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15.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접수 제22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콘도는 위 증여 당시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마. B와 피고는 1994. 2. 5.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F생, G생, H생인 자녀를 3명 두었는데, 2016. 2. 5.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redacted]지방법원 2016호협252), 2016. 5. 27.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2016. 5.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B에게 2015. 11.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가 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B가 체납자가 된 2015. 12. 1. 또는 늦어도 2016. 3. 1.에는 B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인 2018. 4.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B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만으로는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B의 이 사건 콘도 처분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B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이혼급부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의 성격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B와 피고 사이에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B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이 사건 증여는 단순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다(협의이혼 신청이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3개월 뒤에 이루어진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산분할 대상 중 유일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콘도(시세 약 3,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로써 취득한 수익액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는 1994. 2. 5. B와 혼인하여 2016. 5. 30. 협의이혼에 이를 때까지 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2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와 B 사이에는 협의이혼 당시 2명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고, 피고가 위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일 기준으로 약 5년 동안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④ 협의이혼 당시 B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로 양육비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콘도를 양도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군 I에 있는 J건물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10층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내지 10층.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군 I 대 20673㎡

3.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8층 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1.28㎡. 끝.